



EU 新철강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2018년부터 유지돼 온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가 6월 30일 만료된 가운데, EU는 新철강 조치(쿼터제+관세 인상)를 도입해 철강 수입 규제를 지속하기로 했다. 새 제도는 기존 대비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축소하고, 쿼터 초과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일부 강화한 데 이어,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강화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EU의 전체 무관세 쿼터는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3만t을 배정받아 기존 쿼터 대비 감소율이 약 19.7%에 그쳐, 전체 쿼터 감소율(46%)에 비해 감소 폭이 제한적이다. 또한 對EU 주요 철강 수출국인 튀르키예(28% 감소)와 인도(30% 감소)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수준의 쿼터를 확보해 우리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 철강 수입규제가 상시화되고,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등 주요국으로 철강 고율관세 기조가 확산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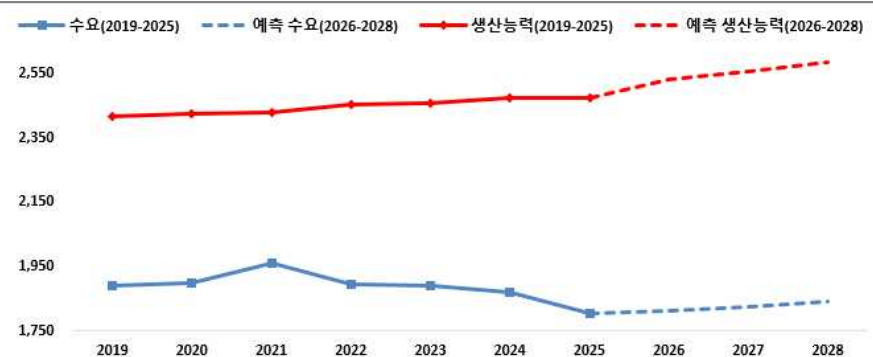
1. EU 新철강 조치 도입 배경

▶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과 미국의 철강 보호조치 강화로 EU 철강산업의 부정적 영향 확대 우려

- (글로벌 공급 과잉)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생산능력 확대가 지속되면서 EU 철강산업은 설비가동률 저하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
- 세계 철강 과잉생산은 '25년 6억 4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28년에는 7억 4,500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¹⁾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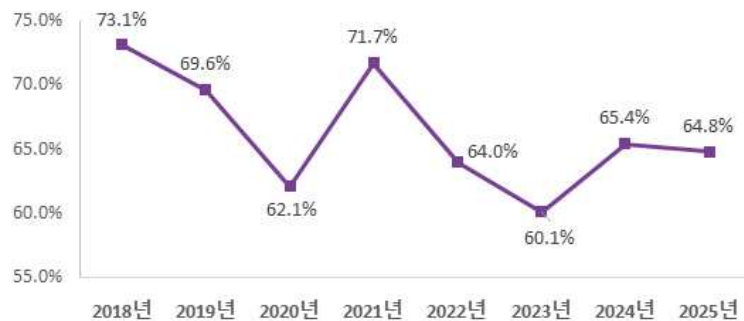
자료: OECD

1) OECD(2026.6.4.), "OECD Steel Outlook 2026"

- EU 철강산업의 설비가동률은 '18년 이후 60%대에 머물고 있으며('21년 71.7% 제외), EU 집행위가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85%를 크게 하회²⁾)

EU 철강 설비가동률(Capacity Utilisation)

(단위: %)



자료: EUROFER(유럽철강협회)

- **(글로벌 보호무역 정책 강화)**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25%→50%)에 따라 미국향 수출 물량이 EU로 전환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 피해가 심화될 것을 우려
 - * 美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8년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2기 행정부에서는 이를 50%로 인상('25.6.4.)
- **(EU철강 경쟁력 저하 우려)** EU 철강 업계는 정부 주도의 탈탄소화 이행 과정에서 생산비용이 증가해 역외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
- 녹색 철강 생산은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EU의 산업용 전기료는 중국과 미국에 비해 2-4배 높아 **생산비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음**³⁾

▶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6월 30일부로 종료

- EU는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18년 6월 도입해 '26년 6월까지 총 8년(3년 시행 + 5년 연장) 간 시행

기존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주요 내용

- **(대상)**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등 30개 철강 품목
- **(기간)** 2018.7.18. ~ 2026.6.30. 총 8년 (잠정조치 기간 포함)



* 세이프가드는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1차 연장은 3년, 2차는 2년까지만 가능

- **(쿼터) 품목별 '15-'17년 평균 수입량 + 5%(1년차)**, 이후 연도별 쿼터 증량률에 따라 쿼터를 확대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 그 외 국가에는 **글로벌 쿼터**를 적용하며, 쿼터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
 - 국별 쿼터를 소진한 경우, 4분기에 한해 글로벌 쿼터 잔여 물량 활용이 가능
 - 한국은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 후판 등 13개 품목에서 국별 쿼터를 적용

2) European Commission(2025.3.19.), "A European Steel and Metals 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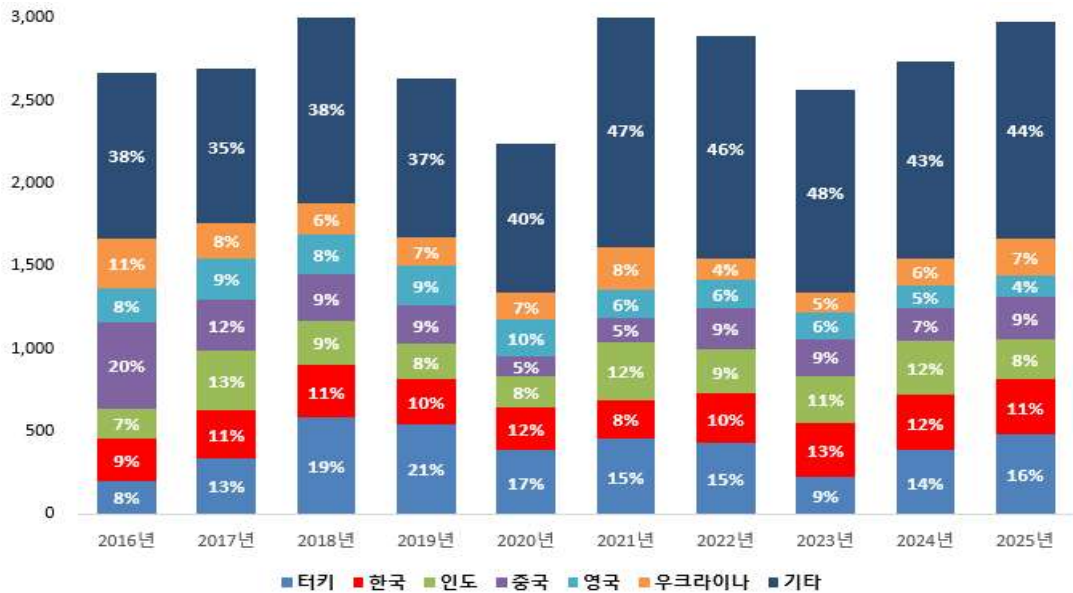
3) Andrii Glushchenko(2026.3.17.), "Production costs for green steel in the EU make it uncompetitive", GMK Center

▶ 세이프가드 연장('24.6.) 이후에도 EU의 철강 수입이 증가하자, EU집행위는 세이프가드 규정을 개정('25.4.1. 시행)하여 역내 철강산업 보호조치를 한층 더 강화

- EU의 판재류·봉형강류 수입은 2024년 전년 대비 6.6%, 2025년 8.8% 증가하며 EU는 기존 세이프가드의 수입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

EU의 철강 수입 추이(2016~2025)

단위: 만 톤, %



주: EU의 철강 수입 물량은 완제품 기준
자료: EUROFER

- **(무관세 쿼터 증량을 축소)** EU는 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쿼터를 매년 확대할 의무가 있지만 쿼터 증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으며, 특히 '25년 7월부터 쿼터 증량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축소하며 무관세 쿼터 물량을 사실상 동결

*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영구적 수입 제한이 아닌 일시적 조치로, 시행 기간 동안 수입 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 무관세 쿼터가 100만 톤이고 쿼터 증량률이 0.1%인 경우 차년도에는 100.1만 톤까지 무관세 수입 가능

EU 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증가율(liberalisation rate) 조정 경과

시 점	조정 배경	쿼터 증량률
2019.2.	최종조치 최초 시행	5%
2019.9.	1차 기능검토	3%
2022.7.	3차 기능검토	4%
2024.7.	연장조치	1%
2025.7.	강화조치	0.1%

자료: EU집행위 철강세이프가드 개정 시행규정(2025/612), 저자정리

- **(자국쿼터 이월 제한)** 미사용 국가별 쿼터를 다음 분기 이월(carry-over) 사용하는 것을 제한
- **(잔여쿼터 활용 제한)** 특정 국가의 잔여쿼터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증가가 두드러지는 18개* 품목군에 대해 국별 쿼터를 소진한 경우, 타국 미사용 쿼터 활용을 제한('25.7.~)

*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컬러강판, 석도강판, 철근, STS 봉강·선재 등을 포함

- EU집행위는 「EU 철강 및 금속산업 행동계획(Steel and Metals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철강 수입규제를 한시적 조치에서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25.3.)⁴⁾

- 상기 계획은 세이프가드 강화, 조강 원산지 기준 도입 검토 등 주로 수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

▶ EU 철강업계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의 실효성 부족과 미국의 철강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우려를 근거로 기존 제도 종료 이후 강화된 후속조치 도입을 요구

- **(EU회원국 공동성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 프랑스 등 11개국은 글로벌 과잉생산과 미국발 철강 보호조치 확산을 근거로 세이프가드를 조기 종료와 '26년 1월부터 강화된 철강 쿼터(TRQ) 조치 도입을 촉구('25.7.28.)⁵⁾
- **(EU철강협회)**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따른 무역전환을 우려하며 ▲쿼터(TRQ) 도입, ▲기존 대비 쿼터 축소, ▲쿼터 초과분 관세율 상향(25% → 50%) 등을 요구

- 미국의 수입규제로 차단된 철강 물량 3톤당 약 2톤이 EU 시장으로 무역전환되었다고 추정⁶⁾

▶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의 세이프가드 후속조치 도입 시에도 기존 세이프가드 체제 대비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25.8.18.)

- 한국 정부와 한국무역협회·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사는 한-EU FTA와 WTO 세이프가드 규정을 근거로 후속조치 도입에 반대하고, 불가피하게 도입될 경우 한국산 철강의 예외 적용, 기존 쿼터 유지 및 품목별 예외를 요청

EU 철강 세이프가드 후속조치 관련 무역협회 의견 요약

1. 세이프가드 후속 조치는 한-EU FTA의 경제협력 취지에 반하므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예외 적용 필요
2. 쿼터 조치를 도입할 경우, 후속조치 시행 직전 3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국별 쿼터 설정 요청
3. 미사용 쿼터 물량의 이월(carry-over)을 허용하는 등 후속조치를 유연하게 운영 요청
4. 한국은 EU와 FTA 체결국으로 FTA 비체결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제3국 물량에 의해 쿼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별 쿼터 별도 배정 요청
5. EU 내 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고려해 품목 예외 제도(product exclusion) 도입을 요청
6. 對EU 투자 한국 기업(한국 자동차 기업 등)이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요청

자료: 무역협회 의견서

4) 최석영, 임채민 등(2025.11.4.)“EU의 철강 수입 규제안: 배경 및 시사점”, 법무법인 광장

5) IndustriAll Europe (2025), “Non-Paper on the New Trade Protection Framework for the European Steel Industry”(재 인용: Eurofer Press Release, 2025.7.29.)

6) Eurofer(2025.6.19.), “Trade Fact Sheet”

2. EU 新철강 조치 주요 내용

▶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 대비 ▲무관세 쿼터 1/2 수준 감축,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인상(25%→50%), ▲조강(melt-and-pour)* 국가 보고 의무를 도입

* 조강(melt-and-pour)이란 철강 또는 선철(raw steel and iron)이 제강 또는 제선로에서 최초로 액체 상태로 생산되고, 이후 최초의 고체 상태(primary solid state)로 주조되는 공정을 의미

- (쿼터)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를 1,835만 톤으로 제한하여 '24년 대비 **46% 감축**
- (관세율)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50% 인상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무역전환을 우려해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 (조강국 보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10/1부터 **조강 국가 보고 의무**를 도입하였으나, 쿼터를 조강국 기준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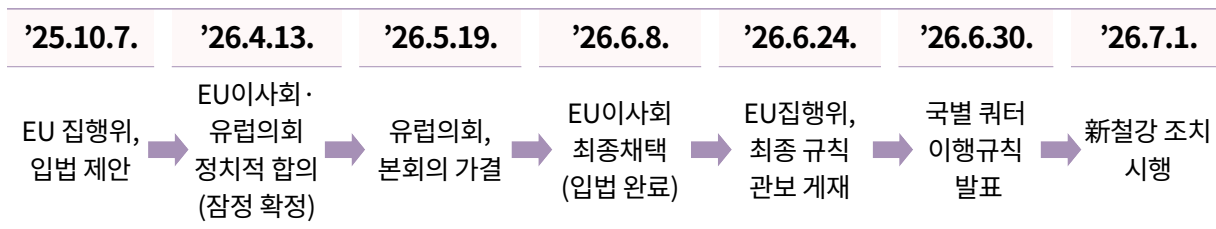
▶ 新철강 조치(쿼터제+관세 인상)는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 직후인 7월 1일부터 시행

- '25년 10월 집행위가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한 후, '26년 5월 유럽의회 가결, '26년 6월 EU 이사회 최종 채택을 거쳐 6/24 최종 규칙(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

* Regulation (EU) 2026/1384 (OJ L, 2026/1384, 24.6.2026.)

- 새로운 쿼터 조치 시행(7/1)을 앞두고, EU집행위는 **국가별 쿼터를 발표(6/30)**

EU 新철강 조치 입법 추진 경과



▶ 新철강 조치는 국가별 쿼터 배분 시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

국가별 쿼터 배분시 고려 요소

1.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 EU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13년 수입시장 점유율
2. 2022~2024년 품목군별 수입 비중을 기준으로 한 품목별 쿼터
3. **현재 혹은 향후 체결될 자유무역협정(FTA)**
4. EU 철강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제3국의 무역조치
5. 해당 국가가 ILO 협약 또는 다자간 환경협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6. GATT 1994 제28조에 따라 EU가 체결한 국제협정
7. 철강의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정** 또는 비구속적 합의
8. 공급처 다변화의 필요성
9. 예외적이고 긴급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후보국의 국가 이익
10. **조강(melt-and-pour) 원산지 관련 정보**

- 우리나라는 **한-EU FTA('11.7. 발효)** 체결국이자 **GFSEC* 참여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우호적인 국가별 철강 쿼터를 확보

* GFSEC(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는 철강 과잉생산(Global Steel Excess Capacity)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16년 설립된 OECD 기반의 국제 협의체

-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는 기존 세이프가드의 예외국 지위를 유지해 신규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러시아산 철강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

EU 철강 쿼터 배분 시 예외 국가

대상 국가	예외 내용	근거
EEA 국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관세 할당 및 관세 적용 제외 (명시적 적용 배제) - 조강국 보고 의무는 적용	- EU 단일시장과 긴밀하게 통합 - 對EU 철강 수출 물량이 제한적 - 기존 세이프가드의 예외국 지위 유지
우크라이나	- 쿼터 배분 시 우대 고려	- EU 가입 후보국 - 예외적이고 긴급한 안보상황 고려
러시아	- 러시아산 단계적 퇴출 선언 - 러시아산 슬래브 예외조치 종료	- EU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공동선언문

주 : 러시아산 관련 내용은 규칙(Regulation)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규칙과 함께 발표된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임

▶ 6/30 EU집행위는 국가별 무관세 쿼터 배분을 규정한 이행규칙*을 발표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457 (OJ L, 2026/1457, 30.6.2026)

- 무관세 쿼터 총 1,835만 톤 중 ▲절반은 **FTA 체결국에만 배정**하고, ▲나머지 절반은 FTA 체결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상대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분
- **우리나라는 연간 207.3만 톤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여, 기존 세이프가드 8년차 쿼터(258.1만 톤) 대비 **19.7% 감소에 그침**
-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고 남은 물량은 **공용(글로벌) 쿼터**를 선착순으로 운영
- 30개 품목별로 최근('22-'24 평균) EU 수입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는 국가별 쿼터를 배정받고, 그 외 국가는 공용 쿼터를 통해 수출 가능
- 우리나라는 30개 품목 중 14개 품목에 대해 국가별 쿼터를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품목은 공용 쿼터를 이용할 수 있음

무관세 쿼터 배분 구조

총 쿼터 (1,835만 톤)	FTA 체결국 (50%)	국가별	점유율 5% 이상 FTA 국가 대상
		배정국 공용	점유율 5% 이상 FTA 국가 대상 공용 쿼터 *선착순
		기타국 공용	점유율 5% 미만 FTA 국가 대상 공용 쿼터 *선착순
	모든 국가 (50%)	국가별	점유율 5% 이상 모든 국가(FTA+非 FTA) 대상
		기타국 공용	점유율 5% 미만 모든 국가(FTA+非 FTA) 대상 공용 쿼터 *선착순

▶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조강(melt-and-pour) 기준 강화

- **(증빙 제출)** 수입자는 조강국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소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10/1~)
* EU집행위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한 이행법령을 8/31까지 마련할 예정
- **(쿼터 배분)** '27년 10월부터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조강국 정보를 반영
- **(조강국 기준 전환 검토)** EU 집행위는 '28년 6월까지 조강 국가를 쿼터 배분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평가

▶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가 추가될 가능성

- **(무관세 쿼터)** 시장 상황을 고려해 EU집행위가 총 쿼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집행위 초안과 달리 이사회·유럽의회 협의 과정에서 **연간 2,220만 톤의 상한**을 설정('24년 물량의 약 65% 수준)
- **(분기 이월)** 집행위 초안은 미사용 쿼터의 분기 이월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종 법률에서는 **분기 이월을 허용**(다만 품목별 이월 허용 여부는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조강국 기준)** 현재 '원산지' 기준으로 운영되는 쿼터 배분 방식을 향후 '조강국'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 **(품목 추가)** 향후 검토 결과에 따라 주철관 및 일부 선재, 단조봉강에 대한 추가 규제가 도입되거나, **철강 다운스트림(파생) 제품**으로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향후 검토 내용

검토 항목	시기	내용
무관세 쿼터	연간	- 무관세 쿼터는 연 단위로 설정 (7/1~다음 해 6/30) - 연간 쿼터는 1,440~2,220만 톤 범위에서 조정 - 쿼터 조정 시 전체 수요, 수입 점유율, 과잉생산 변화 등을 고려
분기별 미사용 쿼터 이월	2년차 ('27.7.~)	- 품목별로 분기 간 이월 허용 여부 검토 - 수입압력, 쿼터 소진율, 다운스트림 공급 확보 상황 등을 고려
조강국 기준	'27.10.~	- 조강국 정보를 쿼터 배분 시 활용
	2년 이내 (~'28.6.)	-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조강국 기준으로의 전환 여부 검토
대상 품목	6개월 이내 (~'26.12.)	- 주철관, 일부 선재, 단조봉강 등 확대 여부 검토
	12개월 이내 (~'27.6.)	- 철강으로 제조되었거나 상당량의 철강을 포함한 철강 다운스트림(파생) 제품 으로의 확대 여부 검토
	~'29.6. & 이후 2년 마다	- 정기적으로 품목범위 검토

3. 우리 기업 영향 및 시사점

1 주요 수출 시장인 EU의 新철강 조치 도입으로 업계 부담 예상

- '20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EU 철강 수출은 **연평균 314만 톤**에 달하며, EU는 물량 기준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
- '25년 對EU 철강 수출은 대부분 국별 쿼터와 글로벌 쿼터에 해당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치 강화에 따른 쿼터 축소 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 불가피
- '25년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은 약 321만톤이며, 이 중 258만톤은 국별 쿼터를 적용받고 잔여 물량은 글로벌 쿼터 물량을 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
 - * 다만, 對EU 수출은 MTI 61 기준에 따른 수치로, HS코드를 기준으로 한 실제 수출물량보다 과대 추정될 수 있음

국가별 한국 철강 수출 물량

단위: 만 톤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5년 연평균
EU	260	272	317	335	378	321	314
미국	214	286	247	253	269	248	253
중국	542	367	276	224	195	169	296
일본	341	364	309	355	361	333	344
인도	203	240	246	280	304	280	259
멕시코	158	220	196	224	228	165	198
베트남	201	167	119	118	147	180	155

주: 연도별 수출물량 기준 상위 2개국 표시(주황색: 1위, 초록색: 2위)

자료: K-stat (MTI 61)

2 한국, 우호적인 국가별 쿼터 확보

- 한국은 국가별 쿼터 207만 톤을 배정 받아 기존 쿼터(258만 톤) 대비 약 19.7% 감소*했으나, 전체 무관세 쿼터 감소율(46%)에 비해 감소 폭이 제한적 수준에 그침
 - * 기존 세이프가드 8차년도('25.7~'26.6) 무관세 쿼터와 비교한 수치
- 한국은 주요 철강 수출국인 **튀르키예**(28% 감소) 및 **인도**(30% 감소) 대비 **우호적인 쿼터 배정**으로 업계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은 234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무관세 쿼터 물량이 **1/3 수준**으로 축소
- 국가별 쿼터 소진 이후에도 공용(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추가 수출이 가능

주요국 쿼터 배분 여건 비교

		한국	튀르키예	인도
쿼터 배분	기존 세이프가드	258만t	399만t	279만t
	新철강 조치	207만t	286만t	194만t
	감소율	19.7%	28.4%	30.2%
對EU 수출*(천 톤)		3,296	3,898	3,275
FTA 체결 여부		'11년 발효	관세동맹	'26년 타결
GFSEC 참여 여부		O	O	X

주1: 기존 세이프가드 쿼터 배분은 '25.7월부터 '26.6월까지의 국가별 쿼터

주2: 對EU 수출은 '24년 해당 국가로부터 EU가 수입한 철강 완제품 물량(출처: Eurofer)

3 조강(melt-and-pour) 기준 강화에 따른 우리 기업 영향

- **(조강국 보고 의무)** 조강국 입증서류 제출 의무가 신설되면서 기업의 **행정부담이 증가할 우려**
 - 다만 국내 주요 철강사는 대부분 자체 조강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
 - 반면 일부 중소 철강사는 공급망 추적 및 증빙 확보 과정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 **(조강국 기준 전환)** 향후 국가별 쿼터 배분에 조강 기준이 도입될 경우 우리 기업에 **복합적인 영향** 예상
 - 국내 철강사가 제3국 생산거점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물량도 한국 쿼터에 포함되어 **쿼터 소진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반면 중국 등 글로벌 과잉생산국 철강이 제3국 가공을 거쳐 EU로 **우회 수출되는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국내 철강업계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EU 집행위가 조강국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실제 국가별 쿼터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

4 글로벌 철강 관세 인상 확산

- **미국**이 232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25.6.)한 이후, **캐나다**는 쿼터(TRQ) 도입 및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도입('25.8.)했으며, **영국**도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26.7.)이어서, 철강산업에서 50% 수준의 고율 관세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발생
-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시장인 인도와 멕시코도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철강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미체결국(한국 포함)을 대상으로 열연·냉연강판, 도금강판 및 강관 등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3-5%에서 20-50%로 인상('26.1.1.~)⁷⁾
- 인도는 판재류 철강에 대해 200일간 12%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25.4.21.) 한 데 이어, 3년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정 판정('25.12.30.)⁸⁾
 - * 1년차('25.4.21.~'26.4.20.): 12%, 2년차('26.4.21.~'27.4.20.): 11.5%, 3년차('27.4.21~'28.4.20.): 11%
- 주요 수입국의 고율 관세는 우리 철강의 직접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이 낮은 제3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주요국 철강 관세 50% 부과 현황

	미국	캐나다	영국	EU
시행일	'25.6.3.	'25.8.1.	'26.7.1.(예정)	'26.7.1.(예정)
쿼터	X	'24년 수출물량의 100% ^{8/1} →75% ^{12/26}	기존 대비 51% 감축	'24년 대비 46% 감축
비고	232조 품목관세 추가 인상 (25% → 50%)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 차등 (한-캐 FTA)	기존 세이프가드(25%) 대체·강화	기존 세이프가드(25%) 대체·강화

7) 멕시코 연방관보(2025.12.29.), “일반수입세 및 수출세법(LIGIE) 관세 품목 개정령”

8)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DB(2026.4.24.), “비합금 및 합금강 평판제품 인도 세이프가드 판정”

[부 록] 한국산 철강 쿼터 배분

(단위: 톤)

품목(명)		국가 쿼터		공용 쿼터		
				FTA 체결국		WTO 전체
		시장 점유율 5% 이상	시장 점유율 5% 미만	시장 점유율 5% 이상	시장 점유율 5% 미만	기타국 전체
1A	열연강판	461,830.10		483,682.26		
1B					243.78	179.56
2	냉연강판	254,610.70		134,682.43		
3A	전기강판				21.71	29.08
3B		61,981.54		16,868.24		
4A	도금강판	104,479.74		155,525.96		
4B		442,795.45		78,057.61		
5	컬러강판	167,312.54		50,302.83		
6	석도강판	55,521.66		45,019.43		
7	후 판	319,670.25		90,729.26		
8	STS 열연	20,735.12		11,224.60		
9	STS 냉연	101,884.16		39,741.37		
10	STS 후판	2,060.80		1,114.15		
12	봉강·경형강	56,172.46		56,252.98		
13	철 근				38,299.23	63,322.34
14	STS 봉강				2,834.88	6,120.33
15	STS 선재	5,212.43		3,240.54		
16	선 재		11,334.76			153,927.34
17	형 강		5,006.85			12,614.20
18	강시판				5,782.06	341.13
19	레일관				609.39	881.85
20	가스관				6,925.49	9,356.50
21	각 관				20,599.69	28,696.57
22	STS 무계목강관	2,392.13		2,050.52		
24	무계목강관				47,582.81	39,299.94
25A	대구경 용접강관				2,336.77	2,666.23
25B					5,745.62	5,608.92
26	기타 용접강관				17,131.39	17,434.56
27	냉간 봉강				8,889.74	7,354.33
28	강선류				33,956.87	28,289.12
합 계		2,056,659.08	16,341.61	1,168,492.18	190,959.43	376,122.00
		2,073,000.69		1,735,573.61		

주: 선재(16번)와 형강(17번)은 '22-'24년 평균 EU 수입점유율이 5% 미만으로 국가별 쿼터는 배정받지 못했으나, FTA 체결국 대상 공용쿼터 내에서 일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받음